

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 제2024-55호

##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 공고

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연서 주민의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2024년 1월 9일

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



### ○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권자수

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권자 총수 (A=a+b)	공직선거법상 「선거권이 없는 자」 제외		연서대상 주민 수 (A/70)
	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(a)	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구로구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(b)	
353,648	347,189	6,459	5,053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자치행정과(02-860-246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